

협력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제정 및 최종수정	2023년 6월 14일
문서 담당부서	(정) 소싱팀 (부) 커뮤니케이션팀, 법무팀, 인사팀, 총무팀, 경영개선팀

협력사 행동 규범

(주)F&F(에프앤에프, 이하 당사)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F&F 협력사 행동 규범(이하, "규범")'을 제정하고, 당사 및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가 당사와 관련된 업무 과정은 물론, 제품, 서비스에 있어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준수하고 책임을 가져야 함을 명시합니다.

당사의 협력사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근로자 인권을 준수하고, 환경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하며, 모든 협력사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목차]

1. 인권 및 노동
2. 보건안전
3. 환경보호
4. 기업윤리

1. 인권 및 노동

협력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규직은 물론 임시근로자, 이주 근로자, 실습생, 파견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 보호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① 자발적 근로

협력사는 강제 노동, 착취 노동 및 비자발적인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여권, 취업 비자 등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규에서 필요한 경우 예외)

또한 근로자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 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하며 채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 아동 근로자

협력사는 제조 공정에서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연령의 기준은 ILO 협약에 의해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과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을 고려합니다. 또

한, 18 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잔업, 야간근무 등을 포함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근로 시간

협력사는 근로 시간 및 시간외 근무에 관한 지역 및 현지 법상의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해당 법규에서 허용한 정규 및 잔업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부당한 해고 방지

협력사는 근로자들의 업무 결과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되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 건강 상태의 개인적 특성에 의한 부당한 해고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⑤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인 최저 임금,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 법규 상 규정된 일정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통해 직원의 급여 지급 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정규 시간당 수당보다 높은 수당으로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정보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 또는 법에 의거한 전자 문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⑥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합리적인 징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⑦ 차별 금지

협력사는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판단 근거를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 건강 상태의 개인적 특성에 의한 불법적인 차별이 아닌 근로자의 능력에 기반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⑧ 노동운동의 자유

협력사는 ILO 협약 및 직원의 노동권을 규정하는 현지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형태로 자유롭게 결사할 수 있는 직원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합법적으로 조직을 설립하고, 조직에 가입하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당사는 조직과의 단체 협상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는 보복이나 협박, 괴롭힘에 대한 두려

움 없이 근로 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보건 안전

협력사는 지속적인 품질 유지와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안전한 공정/작업 환경을 설계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① 산업 안전

협력사는 물리적인 위험과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사고와 직업병을 방지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제어, 예방 정비, 안전한 작업 절차, 지속적인 안전 훈련을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안전 훈련에는 비상사태 대응 절차와 설비 사용법, 공정/작업별 안전 지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절하고 정비가 잘 된 개인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② 비상사태 대비

자연재해로 인한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인재(人災) 등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보고와 공지, 대피 절차, 복구 계획을 포함한 비상사태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탈출 시설과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③ 산업 재해 및 질병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사례를 조사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직원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④ 작업장 위생

협력사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적 또는 행정적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이러한 위험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⑤ 육체적 과중 업무

협력사는 육체노동의 위험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육체노동에는 수작업,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장시간 서 있는 작업, 반복적이거나 체력 소모가 심한 조립 작업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또는 순환근무/스트레칭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합니다.

⑥ 기계 설비의 안전 유지

협력사는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방호물, 안전을 위한 장치, 방호벽을 제공하고 설비로 인해 직원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설비의 유지, 보수를 통하여 설비의 안정성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⑦ 위생, 식품, 주거

협력사는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보관,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와 난방, 환기장치, 적당한 개인 공간, 합리적인 출입 권한을 부여하여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⑧ 보건 안전 교육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보건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 안전 관련 정보는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3. 환경 보호

협력사는 제조 공정에 있어 환경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재활용, 산업 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제품 설계, 생산 등에 필요한 환경 기준을 기타 계약에서 요구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① 환경 인허가 및 보고

협력사는 필수 환경 인허가 사항(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을 취득, 유지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협력사는 생산/정비 공정 및 시설의 효율화, 원료 대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원 저감하고 용수 등 자연자원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③ 유해 물질

협력사는 환경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배출될 경우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화합물이나 기타 물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재사용, 처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물질의 사용, 취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고형 폐기물 및 폐수

협력사는 관련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운영상 산업 공정, 위생시설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폐수를 배출하기에 앞서 이를 식별, 감시, 통제, 처리해야 하며, 고형 폐기물 및 폐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폐수 처리 공정의 처리 효율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⑤ 대기오염

협력사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이나 연무제, 부식제, 미립 분말, 오존 파괴 물질, 공정 중 발생한 연소 부산물은 관련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배출 이전에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 통제해야 하며, 현지 법규에 따라 관리/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⑥ 제품 함유 물질 규제 및 적정 표시

협력사는 재활용 및 처리 라벨 표시를 비롯하여 특정 물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한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⑦ 우수 관리

협력사는 체계적으로 우수 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배출과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오염물질의 우수관거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⑧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적용해야 합니다.

⑨ 생물 다양성

협력사는 사업장 주변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영역에서 생물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 또는 소실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하여 적절한 생태계 개체군의 유지에 기여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이 현저히 감소 또는 소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정부 간 기구, 비정부 부문,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의 감소 또는 소실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재의 구매 및 생산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준수하여

야 합니다.

⑩ 산림보전 (팜 오일과 유래원료)

자연림과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및 자연 생태계 또는 이탄지를 농업, 농장 또는 기타 토지 이용으로 전환하거나 심각한 산림 벌채나 인간에 의한 심각한 파괴를 포함하는 전환을 해서는 안되며, 자연림 및 생태계의 장기적 보호 및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토지 권리, 천연 자원의 사용, 원주민 및 지역 사회의 권리에 관한 현지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기업윤리

협력사의 경영활동은 사업장 운영 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비즈니스 청렴성

협력사는 모든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형태의 이득 제공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선물 제공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재무 투명성

협력사는 모든 사업 및 거래에 있어 상업적 거래를 투명하게 수행해야 하며,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한 재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협력사의 사업이 범죄 활동으로 돈을 거래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모든 재무 정보는 내부 거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③ 공정거래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카르텔, 반경쟁 관행 등과 같이 기업윤리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쟁사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취득과 경쟁사 비방, 금품이나 향응 수수를 금지합니다.

④ 동반성장

협력사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동반성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협력사의 자체 공급업체를 위해서도 동반성장 프로그램 및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⑤ 이해관계 상충

협력사는 계약을 협상하거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당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를 회피해야 합니다.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

F&F

계가 있을 경우(예. 가족, 친인척이 경쟁사 또는 거래처, 협력사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적 이해 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당사에 보고하여 적절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⑥ 정보 공개

협력사는 정보 공개 관련법과 규정, 업계 관행에 근거하여 경영활동과 성과, 재무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 표기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⑦ 지적 재산 보호

협력사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기업 정보는 물론 지적 재산 보호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⑧ 개인 정보 보호

협력사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취득하고 보유해야 하며, 기업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 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할 때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효력]

이 규정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문의 및 불만 제기]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문의 및 불만 보고는 당사의 사이버 신문고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제보는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보자는 기밀 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부당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